

	규정	문서번호	TWP-A505
		제정일자	1996. 05. 14.
	동아리 운영규정	개정일자	2022. 06. 28.
		개정번호	5

## 목 차

- 제1조(목적)
- 제2조(자격 및 범위)
- 제3조(등록요건)
- 제4조(신청절차 및 승인)
- 제5조(등록 시 구비서류)
- 제6조(지도교수)
- 제7조(등록취소)
- 제8조(준수사항)
- 제9조(보칙)
- 별첨
- 부칙

작성부서	교무학생처	제정일자	1996. 05. 14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승 인
직 책	담 당		교무학생처장	기획예산처장	총 장
서 명					
일 자					

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A505
		제정일자	1996. 05. 14.
	<b>동아리 운영규정</b>	개정일자	2022. 06. 28.
		개정번호	5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의 동아리에 대한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2.5.25>

**제2조(자격 및 범위)**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의 모든 동아리의 구성회원은 재학생으로 한다.<개정 2012.5.25>

**제3조(등록요건)** 동아리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학생의 동아리 가입은 1인 1개 동아리로 한다. 다만, 전공동아리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6.28>
2. 동아리의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목적에 찬성하는 학생회원이 4개 전공 이상 20명 이상 이어야 한다. 다만, 전공동아리는 최소 1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 할 수 있다.<개정 2012.5.25>
3. 설립목적과 활동이 다른 동아리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.<개정 2012.5.25>
4. 동아리는 1명 이상의 지도교수가 있어야 한다.<개정 2012.5.25., 2022.06.28>

**제4조(신청절차 및 승인)** 동아리를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학생처에서 공고하는 기간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무학생처에 제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아리 승인서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12.5.25., 2018.02.19., 2022.06.28>

**제5조(등록 시 구비서류)** 동아리를 결성하여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 다만, 전년도 우수동아리로 선정된 동아리의 경우 1호~4호까지의 서류만 제출한다. <개정 2012.5.25., 2022.06.28>

1. 동아리 승인 신청서 1부
2. 가입예정 회원 명단 1부
3. 연간활동 계획서 1부<개정 2012.5.25>
4. 동아리 지도교수 승인서 1부<개정 2012.5.25>
5. 서약서 1부<개정 2012.5.25>
6. 동아리 회칙 1부<개정 2012.5.25>

**제6조(지도교수)** ① 동아리 지도교수는 이 대학교의 교원(강사 제외) 중에서 동아리 회원에 의하여 추대되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동아리의 지도·육성을 위하여 1개 이상의 동아리 지도교수를 겸임할 수 없다. 다만, 전공동아리는 예외로 한다.<개정 2012.5.25., 2022.06.28>

② 동아리 지도교수는 해당 동아리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A505
		제정일자	1996. 05. 14.
	<b>동아리 운영규정</b>	개정일자	2022. 06. 28.
		개정번호	5

여야 한다.<개정 2012.5.25>

③ 동아리 지도교수가 해외연수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부재중일 경우에는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대리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12.5.25>

**제7조(등록취소)**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배된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학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과 총장의 승인으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<개정 2012.5.25>

1. 동아리 결성 목적을 실현할 수 없고, 회원이 더 이상 대학생활에 전념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<개정 2012.5.25>
2. 동아리의 활동이 법령 또는 이 대학교 학칙에 위배되거나 이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
<개정 2012.5.25., 2022.06.28>
3. 1년 동안 동아리 행사 실적이 전혀 없거나 부진한 경우
4. 제8조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교무학생처장의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<개정 2012.5.25., 2018.02.19., 2022.06.28>
5. <삭제 2022.06.28>


**제8조(준수사항)** ①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그 본인이 진다.  
<개정 2022.05.00>

- ② 동아리실에서의 전열기 사용, 고성방가와 소음, 음주 및 취침행위, 낙서 등을 금하며,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5.25>
- ③ 수업시간에는 일체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다.
- ④ 동아리실은 이 대학교의 재학생 이외의 자는 출입할 수 없다. 다만, 교무학생처에서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출입자명단을 교무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5.25., 2018.02.19., 2022.06.28>
- ⑤ 동아리는 동아리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활동결과보고서를 평가하여 우수동아리를 선정할 수 있다.<신설 2022.06.28>

**제9조(보칙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복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<개정 2012.5.25>

#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	<b>규정</b>		문서번호	TWP-A505
			제정일자	1996. 05. 14.
	<b>동아리 운영규정</b>		개정일자	2022. 06. 28.
			개정번호	5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별첨**

- [별지 제1호 서식] 동아리 승인서
- [별지 제2호 서식] 동아리 승인 신청서
- [별지 제3호 서식] 가입예정 회원 명단
- [별지 제4호 서식] 연간활동 계획서
- [별지 제5호 서식] 동아리 지도교수 승인서
- [별지 제6호 서식] 서약서
- [별지 제7호 서식] 동아리 회칙

[별지 제1호 서식]<개정2012.5.25>

## 동아리 승인서

결재	담당	계장	처장	총장

동아리명 :

지도교수 :

위 동아리의 결성 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으로 이를 승인함.

- 다 음 -

1. 승인기간 :

2. 승인조건 :

첨 부 : 동아리 승인 신청서 외 5건. 끝.

년 월 일

[별지 제2호 서식]<개정2012.5.25>

## 동아리 승인 신청서

동아리명 :

결성예정 년 월 일		년 월 일		
대표자	학 번		전 화 번 호	
	성 명			
회원 예정 수		명 ( 남 : 명, 여 : 명 )		
목 적	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 동아리		<input type="checkbox"/> 전공동아리
타교 또는 사회 단체와의 관계				
지도교수	소 속		성 명	

이 대학교의 학생 동아리로서 위의 승인을 받고자 첨부서류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첨부서류 : 1. 가입예정회원 명부 1부  
2. 연간 활동 계획서 1부  
3. 지도교수 승낙서 1부  
4. 동아리 회칙  
5. 동아리 서약서 1부

년 월 일

대 표 자 : 과 성명 (인)

지도교수 : 과 성명 (인)





[별지 제4호 서식]<개정2012.5.25>

## 연간 활동 계획서

( ) 동아리

( ) 회

월 별	주 요 행 사 내 용	행사장소	참가인원	비 고

[별지 제5호 서식]<개정2012.5.25>

## 동아리 지도교수 승인서

동아리 명칭				
결성예정년월일				
동아리 목적				
회원예정수				
동아리 대표	학 번		학 과	
	성 명		생년월일	

본인은 상기 동아리의 지도교수로서 그 책임을 다하며 이 동아리의 모든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전제로 이를 승낙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지 도 교 수 : 학 과  
   성 명

(인)



[별지 제7호 서식]<개정2012.5.25>

## ○ ○ ○ 회 칙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회명) 본회는 ○○○ 이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회의 목적은 ○○○를 향상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○○○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회원자격) 본회의 회원자격은 동원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한한다.

제4조(○○○)

제5조(○○○)

### 제2장 기구

제6조(○○○)

제7조(○○○)